

차근차근 풀어보는 FTA, 모범답안을 찾다!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C사는 유압브레이커 생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수출중소기업임
- 미국, 홍콩,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기계 안전규격 획득을 시작으로 ISO 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 향상과 상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
- 제품 소개

거래품명	HS CODE
유압브레이커	8431.49
물품사진	
용도설명	굴삭기의 유압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압에너지를 받아 이를 장비내부의 충격에너지로 변환하여 목적물의 파쇄를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로 콘크리트 파쇄 및 아스팔트 파쇄와 각종 배수로, 관로공사, 도로공사, 석산 등 암석파쇄작업 및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의 암석 굴착용 장비임

2. FTA 활용전 상황

- C사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약 66%를 차지
- 관세율 차이가 5% 이상으로서 FTA실익이 매우 큼
-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, 협력업체 비협조 등의 이유로 FTA 미활용

3. 장애 요소

- 한-아세안 FTA와 한-인도 CEP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 변경기준(CTH 또는 CTSH) 불충족
- 원재료 공급처인 B사 등으로부터 원산지(포괄)확인서 등 역내산이라는 원산지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워 활용 포기 상태

4. 극복 방안

협정	품명	세번	원산지 결정기준	적용 기준	미소 기준	실행 세율	협정 세율
한-아세안 FTA (캄보디아) (말레이시아) (태국)	유압 브레이커	8431.49	CTH or RVC40% 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 1.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. 40%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	RVC40%	10% (가격)	15% 5% 1%	10% 0% 0%
한-인도 CEPA	유압 브레이커	8431.49	CTSH & RVC35% ●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. 다만, 35%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.	CTSH & RVC35%	10% (가격)	12.5/kg	5%

극복 과정	주요 내용
미소기준 활용	- 107개 원재료 중 원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액이 작은 원재료 O-ring 등 48개품목은 미소기준 적용 - 미소기준은 물품가격의 10% 이내 범위의 역외산 원재료는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됨
수입원재료 거래선의 전환(중국→국내)	- 중국 'OOOO'로부터 수입하는 'MOUNTING BRACKET ASSY' 등 4개 품목은 국내 업체인 'OOO'로 거래선 전환
중간재 활용	- 주요 부품 실린더는 원재료인 철강 잉곳을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재 기준 활용 - 중간재 지정으로 역내부가가치 상승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가능
협력사 설득	- 'VALVE HOUSING' 등 미소기준 적용 이외 품목에 대하여는 공급 업체로부터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 유도

- 한-아세안 FTA 원산지기준(RVC 40% 이상)을 종전에는 미충족 하였으나, 당사에서 생산하는 주요부품인 철강잉곳을 중간재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(RVC 51%)

직접재료비		직접경비, 제조간접비	판매 /일반관리비	이익	FOB가격	RV비율 (%)
역내	역외					
4,389,492원	6,237,357원	3,847,251원		1,274,900원	12,749,000원	51%

3. 활용 효과

- FTA를 통한 바이어의 수입 관세인하 효과와 일부 중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의 수입선을 국내로 전환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국내 원재료 사용 촉진

4. 시사점

-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FTA협정에서 인정하는 미소기준, 중간재 규정 적용 및 원재료 일부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적극 활용한 사례